

#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69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17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건의안의 취지와 제안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건의안 중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이하로 하향”은 실질적 개정 효과가 없는바, 안 의결주문 중 “13세 이하로”를 “13세 미만으로”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건의안 본문 중 “13세 이하로”를 “13세 미만으로”로 수정함.

#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본문 중 “13세 이하로”를 “13세 미만으로”로 한다.

## 〈 수정안 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p>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p> <p>촉법소년 제도는 아동의 발달적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재활을 돋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촉법소년 범죄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p> <p>단순한 비행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성범죄, 강도, 집단폭행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러한 현실은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p>	<p>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p>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또래 집단 폭행, 갈취, 온라인을 통한 범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p>	
<p>현행 보호처분 중심의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범</p>	<p>(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도 실질적인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p> <p>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현행 제도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은 장기간의 정신적 충격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의 대응과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현실은 가해자의 교화에만 치중한 불균형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p>	<p>(원안과 같음)</p>
<p>국제사회는 형사책임 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사회적 환경을 동일하게 반영할 수 없는 일반적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자 권익과 사회 안전 또한 아동의 권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p> <p>따라서 촉법소년 연령을 <u>13세 이하로</u> 하향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p>	<p>(원안과 같음)</p> <p>-----<u>13세 미만으로</u></p>

원 안	수정안
<p>니라, 청소년이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배우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병행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예방 교육과 상담, 심리치료, 재활 프로그램,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함께 추진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입니다.</p>	
<p>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청소년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히며,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p>	<p>(원안과 같음)</p>
<p>하나, 국회와 법무부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u>13세 이하로</u> 하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p> <p>둘, 정부는 법 개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함.</p>	<p>----- ----- -----<u>13세 미만으로</u>  (원안과 같음)</p>

#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촉법소년 제도는 아동의 발달적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재활을 돋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촉법소년 범죄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행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성범죄, 강도, 집단폭행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러한 현실은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또래 집단 폭행, 갈취, 온라인을 통한 범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호처분 중심의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도 실질적인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현행 제도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은 장기간의 정신적 충격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의 대응과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현실은 가해자의 교화에만 치중한 불균형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형사책임 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사회적 환경을 동일하게 반영할 수 없는 일반적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자 권리과 사회 안전 또한 아동의 권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청소년이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배우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병행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예방 교육과 상담, 심리 치료, 재활 프로그램,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함께 추진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청소년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히며,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법무부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둘, 정부는 법 개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함.

2025. 12.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